

##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

(제정 1985.10.30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학칙 제 16조에 근거하여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9.14>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.

1.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 업무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·통제에 관한 사항
3. 대학입학전형의 사전, 중간, 사후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
4.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예체능 실기고사에 관한 중요 사항
6.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한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6.11.>
7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에서 접수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재심 사항 <개정 2011.4.25., 2020.5.18.>
8. 그 밖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<개정 2015.6.11.>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4.9.3., 2015.6.11.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0.9.14>

③ 위원은 입학처장이 추천한다. 다만, 학장 추천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장학사 등 외부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0.9.14.>

[본조개정 2020.8.13.]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구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6.11.>

②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9.14>

**제5조(위원의 임기 및 활동기간)**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주된 활동기간은 대학입시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대학입시 종료 후 일정기간까지로 한다. <신설 2010.9.14>

③ 전 항의 활동기간 외에도 총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신설 2010.9.14>

**제6조(위원의 자격제한)** 해당 연도 위원의 자녀 및 친인척이 본교에 입학지원 예정인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. <개정 2015.6.11.>

[본조신설 2010.9.14]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<개정 2015.6.11.>

**제8조(분과위원회)**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1. 이의제기 심의위원회
2. 입학공정관리위원회

[본조신설 2010.9.14]

**제9조(분과위원장 등)** ①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5.6.11.>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지침으로 총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9.14]

**제10조(법률분쟁처리)** ① 입학 전형결과의 이의제기로 인한 법률분쟁은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한다.  
<개정 2015.6.11.>

② 기획예산실은 필요한 경우,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9.14]

**제11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사무관장)** ①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지원실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<개정 2010.9.14>

**제13조(기타 운영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구 입시관리연구위원회 규정은 자동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